

1.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

資料提供：建設部

건설부는 경제·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토지개발 수요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·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,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.

동 시행령(안)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·공포될 계획임.
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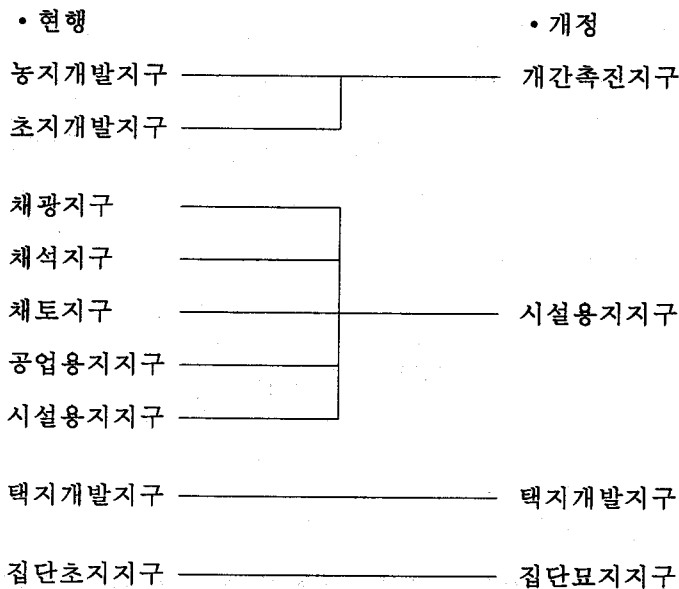
1. 개정 목적

-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장 및 각종 시설부지 확보가 용이하도록 농촌의 행위규제를 완화하고
- 개발촉진지역이 실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역의 세분용도지구 종류를 대폭 축소하며
- 지방자치제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가 추진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을 확대함.

2. 주요 개정 내용

개발촉진지역의 세분용도지구의 통·폐합

- 개발촉진지역은 비교적 이용도가 낮아 현재의 이용상태보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개발목적에 따라 9개의 용도지구로 세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4개로 통·폐합(안 제7조)
- 개정 이유
개발촉진지역의 대부분이 지정 목적과는 달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분 지정할 필요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세분된 용도를 통·폐합하여 토지공급의 탄력성을 부여함.



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완화

<경지지역>

- 경지지역은 주로 농·축산업에 이용되는 지역으로서 농·축산 목적 이외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24가지 항목의 행위만 허용하던 것을,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

불편해소를 위하여 아래의 11가지 항목의 행위를 추가로 허용(안 제14조)

- 3천㎡ 미만인 농·림·수산물의 가공시설과 1만㎡ 미만인 축산물 가공시설
- 농·임·축·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3천㎡ 미만인 유기질비료 및 사료 제조시설
- 5천㎡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충전시설
- 1만㎡ 미만인 자동차 운전교습소
- 3천㎡ 미만인 중기 주기장
- 5천㎡ 미만인 석재가공시설
-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만㎡ 미만인 근로자복지시설·청소년수련시설·교육연구시설
·문화시설
- 1만㎡ 미만인 사회복지시설
- 1,500㎡ 미만인 종교시설
-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
- 자동차관리사업(매매, 정비, 폐차)을 위한 시설

〈산림보전지역〉

○ 산림보전지역은 주로 산림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서 영림과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31가지 항목의 행위만 허용하던 것을,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아래의 9가지 항목의 행위를 추가로 허용(안 제15조)

- 1만㎡ 미만인 농·임·축·수산물 가공시설
- 농·임·축·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및 사료제조시설
- 5천㎡ 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충전시설
- 1만㎡ 미만인 자동차 운전교습소
- 3천㎡ 미만인 중기 주기장
-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만㎡ 미만인 문화시설
- 점토를 원료로 하는 도자기·기와공장 등
- 버섯재배사
- 자동차관리사업(매매, 정비, 폐차)을 위한 시설

〈수산자원보전지역〉

○ 수산자원보전지역은 수산자원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폐수나 특정유해물질

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레미콘·석재
가공시설·양식자재생산시설(스티로폴부자 생산시설)은 폐수배출시설이라도 수산청장
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%까지 증설을 허용(안 제18조)

지자체의 권한 위임확대

- 국토이용계획 결정·변경권에 대한 도지사 위임범위를 현행 15만㎡ 미만에서 30만㎡
미만까지 확대함(안 제58조)
- 공공시설입지승인 대상시설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2개 도 이상에 걸치
는 시설만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(안 제58조).
- 현재는 33천㎡ 미만인 시설과 교통운수시설 등 15개만 위임

용도변경신고제 폐지

-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 등을 부적합한 정도가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
경우에 미리 신고토록 하던 것을 신고절차를 폐지함(안 제42조).
- 개정이유
건축법 등 다른 법에서도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가 중복됨.

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